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1. 3. 19. 규정 제1179호 1차 개정 2021. 4. 16. 규정 제1183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권자의 투표반영비율과 득표수 산정) ①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의 합은 100%로 한다.<2021.4.16.>

②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은 각 직능단체간의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해 확정한다. 각 직능단체간의 합의에 의한 확정이 불가한 경우 선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기로 하고 투표반영비율을 확정된 국립대학의 평균을 적용한다.<2021.4.16.>

③ 득표수 산정과 유효투표수 과반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1.4.16.>

1. 후보자별 득표수는 아래의 수식에 따라 산정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left(\frac{\text{교원득표수}}{\text{교원선거인수}} \times \text{교원반영비율} + \frac{\text{직원득표수}}{\text{직원선거인수}} \times \text{직원반영비율} + \frac{\text{조교득표수}}{\text{조교선거인수}} \times \text{조교반영비율} + \frac{\text{학생득표수}}{\text{학생선거인수}} \times \text{학생반영비율} \right) \times 100$$

2. 유효투표수 과반수 기준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산정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left(\frac{\text{교원득표수총합}}{\text{교원선거인수}} \times \text{교원반영비율} + \frac{\text{직원득표수총합}}{\text{직원선거인수}} \times \text{직원반영비율} + \frac{\text{조교득표수총합}}{\text{조교선거인수}} \times \text{조교반영비율} + \frac{\text{학생득표수총합}}{\text{학생선거인수}} \times \text{학생반영비율} \right) \times 100 \div 2$$

제3조(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① 규정 제19조제2항의 제1호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인영, 제2호 기탁금 납부 증명서는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관위”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른다.

② 규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후보자 추천서(외부인사에 한함)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대상자인적사항” 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 한다.

③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교원 재직증명서)·제5호(보직사퇴증빙서류)는 본교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규정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 및 그 서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궐위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4조(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제출서류) 규정 제19조제5항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다.

1.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3. 공정행위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4. 공약이행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5. 대학발전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6.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제5조(선거인명부) ① 규정 제1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정정 등의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② 규정 제35조에 의한 결선투표는 제1차 투표와 동일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6조(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제출·정정)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공보 검인은 별지 제13호 서식, 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및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제출은 별지 제14호 서식, 규정 제23조제7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정정 요청 및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요청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이의신청서 등) ①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한다.
 ② 규정 제23조제8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정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한다.
 ③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공고 등)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는 별지 제19호 서식, 규정 제38조제3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무효에 대한 공고, 규정 제39조제4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취소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

제9조(선거공보) ① 규정 제23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A4 용지 세로 방향 (길이 297 밀리미터, 너비 210 밀리미터 이내)
2. 면수: 8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사진

②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 선거공보의 검인일자 및 검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및 제출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을 통보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학생 선거인수를 제외한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수량을 공지한다. 선거공보의 작성 및 제출수량은 예상 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대로 한다.

④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교원, 직원, 조교)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형식 및 우송 방식을 추천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 ⑤ 추천위원회가 규정 제23조제5항에 따라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가 우송하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준비 및 필요 사항에 관해 관할선관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할선관위와 협의된 방법과 기한을 준수하여 선거공보를 관할선관위에 인도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송이 아닌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 ⑥ 규정 제23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규정 제23조제8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⑧ 추천위원회는 온라인 선거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작성 및 제출수량, 제출방법 및 발송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선거벽보) ① 규정 제27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첩부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매로 한다.
- ③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한다.
- ④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11조(동순위자 중의 선정 방법) 규정 제3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득표순위가 같은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어서 규정 제35조제1항의 제1차 투표의 차순위 득표자가 1명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규정 제35조제2항의 결선 투표의 대상자 2명이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규정 제35조제2항의 결선 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이 제1차 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를 정한다.

1.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때,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 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본교에 근속한 기간이 가장 긴 후보자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2.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결선 투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2명을 초과한 경우 그 후보자들을 모두 포함시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수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2명을 선정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 2명이 정해지는 결선 투표의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득표순위의 후보자들의 제1차 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제1차 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때에는 본교에 근속한 기간이 긴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부 칙(제정 제1179호, 2021. 3. 19.)

이 시행세칙은 2021. 3.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제1183호, 2021. 4. 16.)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목록]

- 제1호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
- 제2호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후보자 추천서
- 제3호 자기소개서
- 제4호 이력서
- 제5호 공정행위 서약서
- 제6호 공약이행 서약서
- 제7호 대학발전계획서
- 제8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제9호 선거인명부(교원·직원·조교·학생)
- 제10호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 제11호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 제12호 확정된 선거인명부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 제13호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 제14호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서
- 제15호 선거공보·선거벽보 정정요청서
- 제16호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 제17호 선거공보·후보자정보·선거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 제18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 제19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 제20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무효·취소) 공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관리하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후보자(예정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소속 · 직급 등) 성명 :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 귀하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후보자 추천서

후보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성명	학부(과)명	추천연월일	인

- ※ 1) 교원 선거인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추천인 1명당 본 양식에 의하여 1장씩을 제출하여야 함
3) 추천인 “인”란은 서명과 날인 둘 다 가능함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교육, 연구, 대외협력, 행정, 봉사활동 등에 관한 총장후보자의 자기 소개서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을
부착함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근무처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e-mail			

2. 학력(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				
~				
~				

3. 경력(별지 추가 사용 가능, 증빙자료 첨부)

기 간	기 관 명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및 상훈

병역 사항	병역구분	필/면제	구 분	종 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복무기간	~	상훈 및 포상			
	군 별					
	계 급					
	병 과					
징계	처분일자	징계종류				

5. 연구업적 등

항 목	논 문	저 서	특 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① 논문 및 저서

연번	구분	이름	공저 자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 필요시 칸을 늘려 사용함.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함.

② 특허

연번	이름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③ 기타 각종실적

연번	이름	실적내용	일 자	국가명	비 고

* 필요시 칸을 늘려 사용함.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공정행위 서약서

본인은 금오공과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선정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선정과정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수한다.
2.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대결로 총장후보자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하고, 비난·음해 등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와 총장후보자등록자 상호간에 협약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선정 결과에 승복한다.

20 년 월 일

후보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약이행 서약서

본인은 금오공과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선정을 위한 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이후의

후보자 :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 학 발 전 계 획 서

지정된 양식에 맞춰 대학발전계획서를 작성한 후 파일(pdf)과 인쇄본 1부를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학발전계획서는 8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본문은 12포인트를 기본으로 하여 컬러로 작성해 주십시오.

2. 대학발전계획서의 규격은 A4용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대학발전계획서의 기본 구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되,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 사진, 성명, 학력, 경력, 연구실적, 수상실적 및 대외활동 등

3-8페이지 : 후보자의 소견과 정책, 총장후보자임용추천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 순으로 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업무 처리 시 사용

【 동의() / 비동의()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 1) 필수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경력, 병력사항, 상훈, 징계 등
- 2) 선택 정보 : 기타 정보 공개 등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 동의() / 비동의()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반 서류에 기입된 정보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등에 사용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

【 동의() / 비동의() 】

4. 개인정보취급 미동의한 경우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서 접수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의() / 비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동의자 본인: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표 지>

년 월 일 실시 금오공과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 거 인 명 부(교원·직원·조교·학생)

작 성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확 정 : 년 월 일

〇〇대학(원)(〇책 중 〇권)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내지>

등재번호 ①	소 속 ②	주 소 ③	생년월일 ④	성 명 ⑤	투표용지수령인⑥		비 고 ⑦
					1차투표	결선투표	

- 주: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직원, 조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 순 (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 순)으로 적습니다.
 - ② "소속"칸에는 금오공과대학교 이하 학과 또는 소속부서를 적습니다.
 - ③ "주소"칸에는 선거인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앞 번호 숫자를 적습니다.
 - ⑤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⑥ "투표용지수령인" 칸은 투표소에서 선거인의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등을 실시할 때에 한정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⑦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위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 4. 장당 12명 정도 기재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주 :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구 성 원 수 (년 월 일 현재)	선 거 인 명 부 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성원 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비 고

주 : 1. 구성원 수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 수를 적습니다.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 구 성 원 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 한	④ 이의신청 등의 결 정 에 의 한		⑤ 확 정 된 선거인수	구 성 원 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	비고
		감	증	감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칸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②칸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 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④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⑤칸은 ②칸의 선거인수에 ③, ④칸의 수를 증감한 수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수정 상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 지>

선거인명부 수정 상황

선거인명부 등 재 번 호	성 명	수 정 내 용		수정사유	비 고
		수정 전	수정 후		

주 : 1. "수정사유"칸은 이의제기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등 재 번 호	성 명	오기사항 등	비 고

주 : "오기사항 등"칸에는 오기, 선거권이 없는 자, 사망자, 이중등재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 (예: 성명 중 "○○"은 "xx"의 오기임, ○년 ○월 ○일에 퇴직함, ○년 ○월 ○일 사망함 등)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안) 검인 확인서

기호		성명	
----	--	----	--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위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안)을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검인 확인합니다.

■ 공보검인 내용

기재사항	기재 여부	증빙서류 대조확인	위원회 확인
성명, 기호 및 사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연구업적 목록			
대학관 및 총장관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			

검인 결과	
----------	--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선거공보·선거벽보 제출서

1. 선거명: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출내역

구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 (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 - (나)	비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추천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추천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성 명			기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 1. 정정 매수 :
- 2. 정정 내용 :
- 3. 정정 이유 :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〇 〇 〇 인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이 신청서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칸에는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 락 처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①

붙임 : 증명서류 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 · (후보자 정보) · (선거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 대 상 자	후보자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 (후보자정보), (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 학력, 학위, 상훈 · 연구실적 등 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①

붙 임 : 증명서류 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 · 연구 실적 등 그밖에 후보자관련 정보)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제기 대 상 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이의제기 사유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①

붙임 : 증명서류 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 1. "이의제기 내용"칸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연구실적 등)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칸에는 이의제기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칸에는 추천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제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20 - 호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선정순위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1순위				
2순위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38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공고 제20 - 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무효 · 취소) 공고

제〇〇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이 (무효) · (취소)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 다 음 -

기호	성 명	생년월일 (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